

대학원 재입학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11조(재입학)에 따라 재입학에 관한 세부적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)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제적 전 대학원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 (재입학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- 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
- ②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자
- ③ 삭제<2011. 2. 25.>

제4조 (모집인원) ① 자퇴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.

- ② 재입학 및 편입학 여석이 동일한 정원에서 산출할 시에는 재입학을 우선 선발한다.
- ③ 모집인원 산출시 사전 총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신청 및 허가) ① 재입학 지원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락을 얻어야 한다.

-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.
- ③ 재입학은 각 대학원위원회(신학대학원,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)에서 입학 심사한 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6조 (등록)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료와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 (지원서류)

- ① 입학지원서 1부
- ② 재입학신청과정 성적증명서 1통
- ③ 개인정보동의서 1통
- ④ 기타서류 <개정 2016. 4. 6>

제8조 (학점인정) ① 재입학 하기 전에 취득한 과목중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은 'B' 이상(신학대학원은 "D"이상)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15., 2012. 2. 1.>

- ②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인정받은 학점수에 따라 재입학 심사 후 정한다. <개정 2016. 4. 6>

제9조 (준용규정)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,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.

제10조 (특례재입학)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 ②항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각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특례재입학자의 자세한 사항은 재입학 사정시 각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.<신설 2011. 2. 25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
<개정 2011. 2. 25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